

1. 개정이유

수난구호참여자의 출동수당 중 활동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임금 최저액 산정 기준시간을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렴하~~여야~~”를 “수렴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급하~~여야~~”를 각각 “발급해~~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의6제5항 중 “개~~선~~ · 보~~완~~하~~여~~야”를 “개~~선~~ · 보~~완~~해~~야~~”로 한다.

제12조의7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2조의8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불~~하~~여~~야”를 “환~~불~~해~~야~~”로 한다.

제12조의11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2조의12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이~~용~~하~~여~~야”를 “이~~용~~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호~~ · 관~~리~~하~~여~~야”를 “보~~호~~ · 관~~리~~해~~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활동비 중 “240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

수난구조참여자의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과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의 임금 최저액(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을 말한다)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활동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수당

기본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활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초과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 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 1)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하며, 인정유류소모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류 종류	산출기준
경유	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	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BA·BB유 등 중유	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2) 유가

가)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 1)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 2)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3.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On-Board SAR Plan)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선명(Ship's Name)			
선박번호(Registry No.)		선적항(Port of Registry)	
선박소유자 (Ship's Owner)		선박임차인 (Ship's Charterer)	
위성전화번호 (Satellite Tel. No.)			

1. 선장은 승무원 · 여객 또는 해당 선박이 중대하고 급박한 수색구조 위험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에 적힌 해양경찰기관 중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기관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Master of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should contact with the nearest SAR Service enlisted as below when the vessel, crews or passengers are in grave and imminent danger, or in apprehension of grave and imminent danger by means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연락처 (Contact point of SAR service)	전화 (Telephone No.)	팩스 (Fax No.)	텔렉스 (Telex No.)	기타 (Remarks)

※ 뒤쪽의 준수사항(제2호 ~ 제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Approved by the Chief, Coast Guard St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te

해양경찰서장
Chief, Coast Guard Station



첨부서류	1. 구명설비배치도
------	------------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대장기재	→	결재	→	계획서 교부
제출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출인

준수사항

2.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기관과 연락을 할 경우,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For the master of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to make available to contact with SAR Service, the following contents shall be included, if possible, in the report.

①선명 ②선박번호 ③일시 ④위치 ⑤해난의 종류 및 손상상태 ⑥사상자 유무 ⑦기상상태

①Ship's Name ②Register Number ③Date ④Location(Latitude, Longitude) ⑤Nature of disaster ⑥

Whether the dead or injured persons are on board ⑦Condition of weather and sea state

3.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구명설비배치도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The ship's Owner shall furnish layout of life-saving apparatus including followings.

①각종 구명설비의 위치 ②탈출경로 ③신호장치

①locations of life-saving apparatus ②routes of emergency escape ③signal apparatus.

4. 선박소유자는 비상수색구조상황을 가정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로 실시해야 하며, 훈련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Shipowner shall practice the emergency SAR exercise which assume the emergency situation at least once a year under the control of the master, and a period and way of exercise shall be arranged by conferring with the head of regional coast guard station and fire station.

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							
(필수항목)							
①	시 스템 명		통 보 항 목				
	KOSREP		/ SP		//		
	선 명		호 출 부 호				
	A /		/		//		
②	출 항 일 시						
	B /		//				
③	출 발 항		위 도		경 도		
	G /		/		/		//
	목 적 항		위 도		경 도		도 착 예 정 일 시
	I /		/		/		//
④	항 로 정 보						
	항 법		구 간 속 력		위 도		경 도 도 착 예 정 일 시 지 명
	L /		/		/		/
	L /		/		/		/
	L /		/		/		/
	의 료 요 원 의 승 선						
	V /		//				
⑤	JASREP		AMVER		기 타		
	Y /		/		//		
⑥	(임의항목)						
	현 재 침 로						
	E /		//				
	예 정 평 균 속 력						
	F /		//				
	현 재 청 취 중 인 해 안 국		다음 청 취 예 정 해 안 국				
	M /		/		//		
⑦	그 밖 의 사 항(65자 이내)						
	X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영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 재 요 령

① 시스템명등	시스템명은 「KOSREP」, 통보항목은 「SP」로 표시합니다.	
② 출항일시	세계시를 사용하면 날짜는 2자리 숫자로, 시와 분은 네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6자리 숫자뒤에 「Z」로 표시합니다. (예) 세계시 20일 12시00분의 경우: "201200Z"	
③ 위도·경도	위도는 도와 분의 4자리 숫자로, 북위는 「N」, 남위는 「S」자를 붙이며 경도는 도 및 분의 5자리 숫자로, 동경은 「E」, 서경은 「W」자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예) 북위 35도 38분인 경우: 3538N, 동경 139도 50분인 경우: 13950E	
④ L항목(항로정보)	항법	연안항법은 「coastal」, 항정선향법은 「RL」, 대권항법은 「G C」로 표시합니다.
	구간속력	해당 변침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예정속력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3자리 숫자로 표시 (예) 속력 15.0노트의 경우: 150
	위도경도 도착 예정일시	변침점의 위도·경도 및 도착 예정일시를 ②,③의 예에 따라 표시합니다.
	지명	해당 변침점 부근에서의 해역명 또는 육표명을 가능한 한 표시합니다.
⑤ V항목 (의료요원의 승선)	MD(의사), PA(위생관리자), NURSE(간호사), NONE(없음)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⑥ Y항목 (JASREP,AMVER 등)	KOSREP에 참가함과 동시에 JASREP, AMVER 또는 그 밖에 외국 선박위치통보 가입 희망 시 표시합니다.	
⑦ E, F, M 항목 (임의항목)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나 표시할 경우, E항목의 현재 침로는 3자리 숫자로 표시하여, F항목의 전체 항정의 예정 평균속력은 소수점 첫째자리를 포함한 3자리 숫자로 표시합니다. (예) 침로 234도의 경우 E / 234 //로, 속력 15.3노트인 경우는 F / 153 //	
⑧ X항목(참고사항)	임의항목으로, 기상정보(풍향·풍속·파고·천기), 다음 통보 예정시각, 적하의 종류, INMARSAT 전화번호,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의 ID번호, FAX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예) 차기 통보 예정시각: 25일 15시00분, 적하의 종류: LNG, INMARSAT 전화번호: 1234567의 경우 X / 251500 Z / LNG / SAT 1234567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 대비집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 비집행계획에 <u>포함하여야</u>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 대비집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 ----- ----- ----- ----- <u>포함해야</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 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 속 기관의 의견을 <u>수렴하여야</u> 한다.		② ----- ----- ----- ----- <u>수렴해야</u> ---- ----.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고지하여</u> <u>야</u> 한다.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 ----- ----- ----- <u>고지해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 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 -----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
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② (생략)

제10조(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
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
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
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
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
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

---- 신청해야 -----

----- 제공해야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난구조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

----- 발
급해야 ----.

② -----

----- 발급해야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

② -----

발급해야
-----.

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생략)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작성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 발급해야 -----.

② -----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③ -----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생략)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 발급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해야 -----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개선·보완해야 -----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u>발급하여야</u> 한다.	----- ----- <u>발급해야</u> -----.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감독) ① (생략)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u>통지하여야</u> 한다.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통지해야</u> ----- --.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생략)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u>환불하여야</u> 한다. 1. ~ 7. (생략)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환불</u> <u>해야</u> -----.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생략)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u>발급하여야</u> 한다. ③ ~ ⑥ (생략)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발급</u> <u>해야</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정지 처분) ① (생략)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정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1. ~ 5. (생략)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 ③ (생략)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

----- 통지해야 ----.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
----- 통보해야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용해야 ----.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u>보호·관리하여야</u> 한다. ② (생략)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1. 2. (생략)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 ----- ----- ----- ----- ----- <u>보호</u> <u>· 관리해야</u>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 ----- ----- ----- ----- ----- ----- ----- <u>제출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연 락 처	(032) 835 - 2246